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3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30.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7. 18.)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

-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제5호, 제6호)
- 나.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 다. 구립 사회복지시설 최초 민간위탁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5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5.3. ~ 2019.5.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안 제2조(정의)의 제5호 “재위탁” 및 제6호 “재계약”의 신설은 그간 혼용되었던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제5호 중 ‘~~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는 ‘~~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자를 ~~’로 규정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새로운’은 기존 수탁자를 배제하고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다툼(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임.

○ 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제4항 중 후단의 삭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sup>1)</sup>을 따르는 사항이며,

제5항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우리구의 일반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sup>2)</sup>)에 규정되어 있던 구의회 동의 사항을 본 조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례에 적시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같은 항 단서 조항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 하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사항이라고는 사료되나, “재위탁”까지 보고를 동의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의 일반조례와 같이 “재계약” 하는 경우만 동의로 갈음하고, “재위탁”은 삭제하는 검토도 필요해 보임.

- 한편, 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제출되었으나, 이 조례 제3조3) 별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34개소가 규정되어 있고, 이들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상이하고 재위탁 계약일의 도래(到來)가 서로 달라서, 조례 시행 후 위탁사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마련하는 검토도 필요해 보임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안 제2조의제5호에 “재위탁”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라고 나와있는데 새로운 수탁자란 어떤 의미인지, 기존 수탁자를 배제한 새로운 수탁자를 말하는 것인지
- 답 변: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있는 부분을 인용한 부분으로 기존 수탁자도 포함 하는 것인데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을 “다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질 의: “안 제5조제5항에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재계약 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본 개정안은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변: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에 개정되었는데 본 조례안에 반영이 아직 안된 부분이므로 반영해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질 의: 현재 강남구 민간위탁 시설의 계약일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조치가 필요해보이는데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 답 변: 본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김광심 의원으로부터 우리 구 일반조례에 규정된 구의회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2조제5호 중 “새로운”을 “다시”로, 안 제5조 제5항 본문 중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민간위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마련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33호

발의일자 : 2019. 07. 18.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구의회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재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제5호)
-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5호)
- 민간위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새로운” 을 “다시” 로 한다

안 제5조제5항 본문 중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의 사전동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u>새로</u>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 ----- ----- ----- <u>다시</u> ----- ----- -----.</p> <p>6.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u>&lt;신 설&gt;</u></p> <p>⑤ (생략)</p> <p>부칙</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lt;후단 삭제&gt;</p> <p>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u>사전</u>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u>사전</u>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 (개정안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p>
--	---	--

부터  
시행한다.  
<신 설>

례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의 사전동  
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  
영 중인 사회복지시  
설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202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  
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년월일 : 2019. 5. 30.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제5호, 제6호)
- 나.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 다. 구립 사회복지시설 최초 민간위탁시 강남구의회 동의 받아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5.3. ~ 2019.5.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별표 서식 주관부서 중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 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 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 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6. <u>“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 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 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u>이 경우, 재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p> <p><u>&lt;신설&gt;</u></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재계약</u> -- ----- . <u>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lt;후단 삭제&gt;</u></p> <p>⑤ <u>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최 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u></p>

⑤ (생략)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